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회)	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조정하여 공시 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공익법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, 대규모내부거래 중심으로 시장의 자율감시가 집중되도록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,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함(안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. 17. ~ 2. 27.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규제심사 비
대상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말한다)이 50억원”을 “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100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거래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

제36조제1항 중 “말한다)이 50억원”을 “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100억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거래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사회 의결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3조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행위(이하 “대규모내부거래”라 한다)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(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	제33조(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100억원 ----- ----- ---. 다만, 거래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6조(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거래행위의 규모는 그 거래금액(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)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	제36조(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100억원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거래금액이 5억원 미만인

②・③ (생략)	<u>경우는 제외한다.</u> ②・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873